

2019.07.09

## 『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훈령』 개정 안내

### I. 개요

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 행정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### II. 주요사항

#### 1. 개정 사유

- 기타 법령 기준 폐지에 따른 조항 및 문구 정비
- 관세법 시행령으로의 상향 입법에 따른 기준 삭제
- 『질서위반행위법』 입법취지를 고려한 제도 폐지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1) 부과상한제 폐지 (§6조 제2항 삭제)

-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 처리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의 과태료 건별 부과 원칙과 부합하지 않아 부과상한액 설정 폐지
-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의 법리적 모순으로 인한 의견 반영

##### 2) 『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』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

- 훈령을 발령한 경우 3년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짐 (경우에 따라 3년 범위 내 재검토기한 설정 가능)

##### 3) 종전 규정 적용 (부칙 제2조)

- 훈령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 종전 규정 적용

2019.07.09

## 『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훈령』 개정 안내

### II. 주요사항

#### 2. 개정 내용

##### 4)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(별표 1 내지 별표 6 삭제)

- 관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상향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폐지

\* 과태료 부과기준 (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- 2019년 02월 12일)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-> 최근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

나. 적용 차수는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(가목에 따른 기간 내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높은 차수 적용) 의 다음 차수 적용

다. 관세법 제277조 제5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적용, 구간 산정은 위반행위 별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 부터 소급하여 산정하되,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 각각 부과

라.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

마.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

##### 5) 관세법 시행령 별표5의 신설된 내용 반영 (§8조 제1항 4호, 제2항)

- 법에 따른 행정 조사 등의 결과,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 위반행위 시 위반행위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100분의 75 범위 내 감경 가능 기준 추가

-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 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감경을 합계치 100분의 75를 초과할 수 없음 (종전: 100분의 50)

◇ **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**

◇ **시행일자 : 2019년 07월 01일**

◇ **담당부서: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**

김기환 사무관 (TEL : 042-481-7805, FAX : 042-481-7999)

# 「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」 신규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「관세법」 제277조, 제277조의2와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집행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·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제277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,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○ 과태료 부과기준의 관세법 시행령 상향안 반영
제5조(부과기준) ① 법 제277조, 제277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<u>별표 1부터 별표 6까지</u> 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하고, FTA관세특례법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5의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한다. 이 경우 위반차수를 확인하고 차수별 해당 금액으로 부과한다. ② <u>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가중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차수는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</u>	제5조(부과기준) ----- ----- <u>관세법 시행령</u> <u>별표 5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&lt;삭 제&gt;</u>	○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관세법 시행령 별표 5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별표 1 내지 별표 6 삭제  ○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입법에 따른 문구 정비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한다.</p> <p>③ <u>별표 3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은 위반횟수 구간에 따라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위반행위 유형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위반횟수 구간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②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입법에 따른 문구 정비</li> <li>○ 항번호 이동</li> <li>○ 항번호 이동</li> </ul>
<p>제6조(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, 관세조사 또는 부과담당부서의 일체점검 등에 의하여 법 제 277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해당하는 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가 일시에 적발된 경우 관세행정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부과액 = 법정상한액 + (법정상한액 × 19)</u></p>	<p>제5조(수개의 동일한 질서위반행위의 처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태료의 부과상한액 설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폐지(기획재정부, 법제처 의견 반영)</li> </ul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<math>\times (\text{위반건수} - \text{법정상한액 도달건수}) \div \{ \text{위반건수} + (\text{법정상한액} \times 19 \div \text{차수별 해당금액}) \}</math></p> <p>* <u>법정상한액 도달건수(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) = 법정상한액 ÷ 차수별 해당금액</u></p> <p>③ 과태료부과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질서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기·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질서위반행위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기·수시 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○ 2항 삭제에 따른 항번호 이동 및 문구 정비</p>
<p>제8조(과태료의 감경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감경시 그 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감경률의 합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 (이하 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8조(과태료의 감경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,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의 범위</p> <p>② ----- ----- --75를-----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관세법 시행령 별표 5에 신설된 감경기준 추가</p> <p>○ 관세법 시행령 별표 5에 신설된 감경률 합계치 변경내역 반영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제9조(조사 및 의견진술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-2조서식의 의견진술안내문을 미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,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9조(조사 및 의견진술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제2 <u>호의2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문구 정비</p>
<p>제10조(부과통지 및 납부고지) ① 제9조의 절차를 마친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(관세법 위반) 또는 별지 제5-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통지(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)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-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일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부과 명세를 부과통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부과통지 및 납부고지)</p> <p>① ----- -----제5 <u>호의2</u>----- ----- -----제6호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&lt;삭 제&gt;</p>	<p>○ 문구 정비</p> <p>○ 6조제2항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<p>③ 제1항과 제2항의 과태료 부과통지서와 납부고지서 및 이의제기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(생략)</p>	<p>② 제1항에 따른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항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</li> <li>○ 2항 삭제에 따른 항번호 이동</li> <li>○ 2항 삭제에 따른 항번호 이동</li> </ul>
<p>제12조(이의제기와 법원 통보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세관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(관세법 위반) 또는 별지 제7-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(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)를 작성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	<p>제12조(이의제기와 법원 통보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제7호의2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문구 정비</li> </ul>
<p>제15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</p>	<p>제15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설정</li> </ul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유
<p>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
<p>부 칙 &lt;신 설&gt;</p>	<p>부 칙 &lt;관세청 훈령 제0000호, 2019. 7. 1&gt;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전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	<p>○ 관세법 제277조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</p>
<p>[별표 1] ~ [별표 6]</p>	<p>&lt;삭 제&gt;</p>	<p>○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관세법 시행령 별표 5로 상향입법됨에 따라 별표 1 내지 별표 6 삭제</p>
<p>[별표 7] A 1 10 B 1 00 제143조 제1항 위반 (무허가 선용품 하역·환적)</p>	<p>[별표 7] A 1 10 B 1 00 제143조 제1항 위반 (선·기용품 하역·환적 의무 위반)</p>	<p>○ 문구 정비</p>
<p>(별지 제2-2호 서식)</p>	<p>(별지 제2호의2 서식)</p>	<p>○ 문구 정비</p>
<p>(별지 제5-2호 서식)</p>	<p>(별지 제5호의2 서식)</p>	<p>○ 문구 정비</p>
<p>(별지 제6-2호 서식)</p>	<p>(별지 제6호의2 서식)</p>	<p>○ 문구 정비</p>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(별지 <u>제7-2호</u> 서식)	(별지 <u>제7호의2</u> 서식)	○ 문구 정비